

[2020. 5. 20(화) 기준 자료]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정책 모음



코로나 19 관련 기업지원정책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부 각 관련 부처별 기업지원정책을 취합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업 경영 안정화에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20

(사)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이사장

1 코로나 19 관련 기업지원정책 모음 안내 개요

□ 대상 : 수원델타플렉스 관내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 내용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관련 부처별 주요 지원사업
- 2) 지원정책 확인가능 경로 및 상담센터 안내
- 3)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안)

***지원 정책에 관한 세부내용 및 상담은 각 부처별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부처별 주요 지원사업 안내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고용안정 인사/노무	<p>▶사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p> <p>▶대상 :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단,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없이 대상으로 인정)</p> <p>▶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인건비의 최대 9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한시적) 인건비의 최대 2/3 지원(우선지원대상외 기업)</p>	고용노동부 1350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고용안정 인사/노무	<p>▶사업 : 외국인 고용허가제</p> <p>▶내용 :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 조정,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50일 연장(중국, 태국, 베트남)</p>	고용노동부 1350														
	<p>▶사업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p> <p>▶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p> <p>▶내용 : 1인당 일 5만원 10일 지급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p>															
	<p>▶사업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일부지원</p> <p>▶대상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하려는 중소기업</p> <p>▶내용 :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p>															
	<p>▶사업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일부지원</p> <p>▶대상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하려는 중소기업</p> <p>▶내용 :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p>															
	<p>▶사업 :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p> <p>▶대상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체</p> <p>▶내용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지원 확대, 전직 및 재취업, 창업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p>															
	<p>▶사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p> <p>▶대상 : 청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p> <p>▶내용 : 청년 추가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간 900만원 지원</p>															
	<p>▶사업 : 유연근무제 지원</p> <p>▶대상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p> <p>▶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84 1666 1161 1771"> <thead> <tr> <th rowspan="2">기준</th> <th colspan="2">연간 총액</th> <th colspan="2">1주당 지급액</th> </tr> <tr> <th>주3회 이상</th> <th>주 1-2회</th> <th>주3회 이상</th> <th>주 1-2회</th> </tr> </thead> <tbody> <tr> <td>지원금액</td> <td>520만 원</td> <td>260만 원</td> <td>10만 원</td> <td>5만 원</td> </tr> </tbody> </table>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 1-2회	주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 원	260만 원	10만 원	5만 원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 1-2회	주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 원	260만 원	10만 원	5만 원												
<p>▶사업 :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절차 간소화</p> <p>▶내용 : 1)심사절차 간소화 2)지원근로자 확대 3)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p>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고용안정 인사/노무	<p>▶사업 :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p> <p>▶대상 :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35시간으로 단축한 사업주</p> <p>▶내용 : 1) 간접노무비 : 월 40만원 2) 임금감소보전금 월 40만원 / 60만원 3) 대체인력 지원금 : 월 30만원 / 80만원</p>	고용노동부 044-202-7467
	<p>▶사업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p> <p>▶대상 :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업종 종사자</p> <p>▶내용 :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한도 상향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p>	고용노동부 044-202-7406
	<p>▶사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p> <p>▶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p> <p>▶내용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적용</p>	국민연금공단 1355
	<p>▶사업 : 사회적경제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p> <p>▶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4-10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동참여(총괄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 기업 50%이상 이 사회적기업인 경우)</p> <p>▶내용 :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통의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2천만원(vat, 자부담 포함))</p> <p>▶기한 : 2020. 5. 26(화)까지 신청 가능</p>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031-697-7851
대출 / 용자	<p>▶사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코로나19-일시적경영예로)</p> <p>▶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p> <p>▶내용 : 기업당 연간 10억 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p>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357
	<p>▶사업 : 코로나 19 소상공인 직접대출</p> <p>▶대상 : 신용등급 4-10등급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연매출 + 월 상시 근로자수)</p> <p>▶내용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1.5% 대출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p>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p>▶사업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p> <p>▶대상 :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업, 건설업</p> <p>▶내용 : 금융기관 취급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업체당 한도 10억원, 대출금리 연 0.25%)</p>	한국은행 경기본부 031-250-0093
	<p>▶사업 : 특별자금지원</p> <p>▶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p> <p>▶내용 : 최대 5억원, 1년 (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p>	기업은행 1588-2588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대출 / 용자	<p>▶사업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p> <p>▶대상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2020년 388만원)이하 근로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 상병보상 연금 수급자, 장애 1-9급 판정자, 5년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p> <p>▶내용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연 1.25%</p>	근로복지공단 1588-0075
	<p>▶사업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p> <p>▶대상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020년 388만 원) 이하 근로자</p> <p>▶내용 : 2천만원 한도, 연 1.5% 금리</p>	
	<p>▶사업 : 체불사업주 용자 상환 유예 등 지원</p> <p>▶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p> <p>▶내용 : 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상환 일시 유예 (6.15(월), 9.15(화)에 갚아야 할 원금 대상) 2)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및 생활안정 용자금 대위변제 노동자에 대한 급여채권 등 압류, 추심, 유예, 독촉 보류(6월까지)</p>	
	<p>▶사업 : 특별자금지원</p> <p>▶대상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p> <p>▶내용 : 최대 5억 원, 1년 (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p>	기업은행 1588-2588
	<p>▶사업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p> <p>▶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p> <p>▶내용 :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100%), 보증료율 0.8% 적용</p>	신용보증재단 1588-7365
	<p>▶사업 : 우대보증 프로그램</p> <p>▶대상 :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p> <p>▶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p>	신용보증기금 1588-6565
	<p>▶사업 : 특례보증 프로그램</p> <p>▶대상 :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충족 必)</p> <p>▶내용 :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 (85%-)95%), 보증료율 1.0% 고정</p>	기술보증기금 1544-1120
<p>▶사업 :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 실행</p> <p>▶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대응기업 (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p> <p>▶내용 : 지식재산 담보대출 시행 (3월 이내 시행 예정)</p>	특허청 042-481-5009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대출 / 용자	<p>▶사업 :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용자지원</p> <p>▶대상 :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NICE평가정보(주) 개인신용등급기준 1-8등급인 자</p> <p>▶내용 : 3년 거치 3년 불할상환, 금리 1.25%p 차감</p>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826
	<p>▶사업 :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 자금 지원</p> <p>▶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소, 돼지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 10% 이상 감소한 업체</p> <p>▶내용 : 국내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용도로 업체당 1억원 이내, 연리 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p>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23
	<p>▶사업 : 코로나19 피해 해운사 금융 지원</p> <p>▶대상 :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NICE평가정보(주) 개인신용등급기준 1-8등급인 자</p> <p>▶내용 : 1) 선박 금융 지원(선박 담보비율(LTV) 최대 95%) 2)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지원 3) 신규 유동성 지원</p>	해양수산부 044-200-5710
	<p>▶사업 :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지원대책</p> <p>▶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p> <p>▶내용 : 1) 수산정책자금 상환 연장 (올해 상환 예정인 배합사료구매자금,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원금의 상환기간 1년 연장) 2) 수산정책자금 이자납부 유예 (양식어업경영자금등 11개 자금 대상 4~6월 부과 이자를 3개월 간 납부유예) 3) 어선원보험료 납부 유예 (20. 3월 어선원보험 가입 어업인 대상 4~6월 부과 보험료 3개월 간 납부유예)</p>	해양수산부 044-200-5420 044-200-5425 044-200-5431
	<p>▶사업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용자</p> <p>▶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행사, 공연 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p> <p>▶내용 : 1천만 원 한도, 금리 1.0% 인하, 상환기간 유예 등 우대</p>	문화체육관광부 02-708-2261
	<p>▶사업 :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p> <p>▶대상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사람</p> <p>▶내용 : 최고 5백만원 이내, 3년 상환</p>	(재)한국예술인복지 재단 02-3668-0238
세정지원	<p>▶사업 :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p> <p>▶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p> <p>▶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 시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p>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세정지원	<p>▶사업 :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p> <p>▶대상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p> <p>▶내용 : 1) 무담보채무자 : 6개월 유예, 유예기간 이자면제 2) 담보부채무자 : 연체가산이자면제, 담보권실행 유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 한정)</p>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p>▶사업 :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p> <p>▶대상 : 1)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채무자 2) 이차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미소금융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p> <p>▶내용 : 1) 상환유예 : 원금상환 유예기간 종료까지 개선 안 될 경우 기간연장(최대2년) 2) 이차지원 : 6개월 분 이자 보조</p>	서민금융진흥원 1397
	<p>▶사업 :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p> <p>▶대상 :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p> <p>▶내용 : 1)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2)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3) 환급금 조기지급 4)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 중지 포함) 등</p>	국세청 126
	<p>▶사업 : 원부자재 무역활동 지원</p> <p>▶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업체</p> <p>▶내용 : 1) 납기연장, 분할납부 (최대1년) 2)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3) 환급 특별지원</p>	관세청 125
	<p>▶사업 :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및 납부예외 제도</p> <p>▶대상 :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일부 차이가 있는 근로자 등</p> <p>▶내용 : 1)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 2)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조정 신청 3)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p>	국민연금공단 1355
	<p>▶사업 : 해운항만분야 주요 지원 대책</p> <p>▶대상 : 코로나19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해운 항만 업계</p> <p>▶내용 : 1) 항만시설 이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 2)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p>	해양수산부 044-200-5710
	<p>▶사업 : 코로나19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안내</p> <p>▶대상 :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주택용(비주거용), 일반용,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p> <p>▶내용 : 3월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분부터 3개월분(3~5월 청구서) 유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p>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세정지원	<p>▶사업 :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p> <p>▶내용 : 1)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2)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 유예 3) 체납액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 유예 4) 사전통지 및 조사 중 납세자 연기, 중지 신청 적극 승인 5) 모든 납세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 31(월)까지 연장</p>	기획재정부 044-215-4131
	<p>▶사업 :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p> <p>▶대상 : 간이과세자 및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p> <p>▶내용 : 1)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백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20년) 2) (개인사업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p>	
	<p>▶사업 : '착한 임대인' 전폭 지원</p> <p>▶대상 :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p> <p>▶내용 : 민간 임대인 임대료를 인하 시 인하분의 50%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p>	
	<p>▶사업 : 정부,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p> <p>▶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p> <p>▶내용 :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대폭 인하 -국가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3% -> 1% -지자체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5% -> 1%</p>	
	<p>▶사업 :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p> <p>▶대상 :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임차인</p> <p>▶내용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p>	
	<p>▶사업 : 민간소비 지원 정책</p> <p>▶내용 : 1)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2)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3)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백만원, 중소기업 36백만원)</p>	
	<p>▶사업 : 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p> <p>▶대상 :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려는 기업 및 국내 기존 사업장 증설하려는 기업</p> <p>▶내용 :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관세 100% 감면(부분복귀 시 50%)</p>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세정지원	<p>▶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계약제도 절차 완화</p> <p>▶대상 :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p> <p>▶내용 : 1) 소액 소의계약 한도 상향(물품 1억원,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1.6억원 이하) 2)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3) 유찰 수의계약 요건 완화(경쟁입찰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4) 긴급유찰 사유 추가 5) 입찰, 계약 보증금인하(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6) 법정기한단축(검사, 검수 7일, 대금 지급 3일 이내) **기한 :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기획재정부 고시)</p>	<p>기획재정부 044-215-2114</p>
	<p>▶사업 :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p> <p>▶대상 : 코로나19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 채무자</p> <p>▶내용 : 4. 29(수)부터 원금상환유예 시행 예정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 가능)</p>	<p>금융위원회 02-2100-2611</p>
	<p>▶사업 : 코로나19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p> <p>▶대상 : 20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p> <p>▶내용 :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 철거, 원상복구 비용, 사업 정리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 등 비용 지원</p>	<p>중소벤처기업부 042-481-3952</p>
	<p>▶사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p> <p>▶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점포</p> <p>▶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점포 3백만원, 휴업점포 1백만원</p>	<p>중소벤처기업부 042-481-4534</p>
	<p>▶사업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p> <p>▶대상 : 1)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등 2) 해당 직무 1년 이상 실업자(혹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p> <p>▶내용 : 직무교육 제공 및 개별 중소기업에 특화된 코칭 제공 1)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 3일 이내 1회) 2) 현장실습 및 코칭 (훈련수당 및 코칭비 제공) 3) 취업연계</p>	<p>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899-3001</p>
	<p>▶사업 :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p> <p>▶내용 : 1)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3개월분 한시적 감면 (도로, 하천 등 점용허가 받은 개인, 소상공인 대상) 2)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p>	<p>국토교통부 044-201-3807</p>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세정지원	<p>▶사업 : 어선원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p> <p>▶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p> <p>▶내용 :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p>	<p>해양수산부 044-200-5471</p>
	<p>▶사업 : 중소, 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p> <p>▶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기부 지원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 중견기업</p> <p>▶내용 : 1) 공통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2.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축소 및 현금비중 완화 3. 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감면 4. 상황에 따른 연구목표, 기간, 계획 변경 허용 5. 연구비 유연 집행 허용 <p>2) 추가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특성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과기정통부) 2. 기업 재무상황 한시적 적용 제외(산업부) 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민간부담금 완화(중기부) 	<p>산업부 044-202-4534</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523 044-202-6231 044-202-6953</p> <p>중기부 042-481-4452</p>
	<p>▶사업 : 코로나19 특별기획전(힘내라 중소기업) 모집 공고</p> <p>▶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200개사 내외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학교급식 참여 기업 등)</p> <p>▶내용 : 1) 온라인 특별 기획전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광고, 홍보 운영 3) 온라인 쇼핑물 상세페이지 제작 <p>▶기한 : 2020. 4. 21(화) 18:00까지 신청 가능</p>	<p>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02-6300-1736</p>
<p>▶사업 : 2020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가기업 모집 공고</p> <p>▶대상 : 코로나19 피해기업, 브랜드K 기업, '가치샵시다 플랫폼' 입점 기업 등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700개 업체) (B2B제품, 건설-생산자재, 수입품 등 부적합 품목 제외)</p> <p>▶내용 : 1)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로나19 피해 권역 지자체 행사 연계, 참여기업 신규 판로진출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온-오프라인 연계 기획전) 민간 대형 유통채널과 연계한 기획 행사 병행 추진 3) 온라인 쇼핑물 상세페이지 제작 <p>▶기한 : 2020. 5 21(목)까지 신청</p>	<p>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311 ~15 02-6678-9582</p> <p>신청 접수 (www.imstars.or.kr)</p>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수출지원	<p>▶사업 : 유동성 지원 및 수출활력 제고</p> <p>▶대상 : 코로나19로 수출애로 및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p> <p>▶내용 : 1) 유동성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수입자 미결제 문제 신속보상 2. 채권회수 대행 3. 무역금융 우대지원 4. 선적 후 유동화 지원 <p>2) 수출 활력 제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료 우대 2. 중국 외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지원 	한국무역 보험공사 1588-3884
	<p>▶사업 :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지원</p> <p>▶대상 :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U턴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p> <p>▶내용 : 1) 수입보험 품목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국내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3) 국내 유턴기업 특별보증 	
	<p>▶사업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주요 지원 방안</p> <p>▶대상 : 수출 중소기업</p> <p>▶내용 :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긴급 수출안정자금 제공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3) 중소기업 보험료 및 보증료 할인 (50%) 4) 중소기업 신용조사 무료제공 (5회) 	
	<p>▶사업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지원 방안</p> <p>▶내용 : 1)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연속수출허용기간, 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각 60일, 결제기일부터 2개월 이내로 기한 연장) 	
	<p>▶사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체공급처 발굴</p> <p>▶대상 : 코로나19로 부품-원자재 공급 애로에 처한 기업</p> <p>▶내용 : 1) 대체공급처 발굴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 3)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p>▶사업 : 코로나19 긴급 지원 대책</p> <p>▶내용 : 1) 긴급 지사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화상상담 지원사업 3)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수출지원	<p>▶사업 : 2020년 세계일류상품 화상상담회</p> <p>▶대상 : 세계일류상품(현재일류/차세대일류) 생산 강소-중견기업</p> <p>▶내용 : 마케팅 금융-컨설팅, R&D판로,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통역 등 종합 패키지 지원</p>	<p>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02-3460-7248</p>
	<p>▶사업 : 2020년 동남아대양주 온라인 한국상품전 참가기업 모집</p> <p>▶대상 : 국내 중소기업으로 뷰티-유아용품-가전 등 유망분야 디지털콘텐츠 기보유기업(제품홍보영상 보유기업 우대)</p> <p>▶내용 : 온라인 한국상품관 구축, 온라인 프로모션, 화상상담회,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p>	<p>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02-3460-7292</p>
	<p>▶사업 : ICT 솔루션 온라인 특별관 참가기업 모집</p> <p>▶대상 : ICT 솔루션 기업 (스마트워크/엔텍트/스마트 솔루션 재난 방지 관련 분야)</p> <p>▶내용 : 온라인 특별관 개설 지원 및 해외 바이어 상담 지원</p>	<p>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02-3460-7753</p>
	<p>▶사업 : 홈코노미(Homeconomy) 수출지원 사업 공고</p> <p>▶대상 : 홈코노미 품목 관련 기업(의료,개인위생,건강식품,가정간편식 뷰티, 청정가전, 소형가전 등)</p> <p>▶내용 : 해외 유통벤더(바이어)발굴 및 상담(화상) 지원, 유통망 입점 후 현지 판촉지원(일부지역 제한)</p>	<p>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02-3460-7579</p>
	<p>▶사업 : 포스트 코로나19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참가 기업 모집</p> <p>▶대상 : 보건-의료, 홈코노미, 온라인-비접촉 등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 우선 지원</p> <p>▶내용 : 1) 대상지역 : 전 세계 해외무역관 소재지 (84개국 127개 무역관)</p> <p>2) 지원서비스</p> <p>1. 해외기업 리스트 제공(6개사 내외)</p> <p>2. 아래 추가서비스 중 택 1</p> <p>-거래 제안 작성 및 발신 지원</p> <p>-해외기업 반응 알아보기</p> <p>-샘플제품 발송 대행 등</p> <p>*비용 : 지역당 150,000원(부가세 별도)</p> <p>*기한 : 2020. 5. 8(금)~29(금)까지</p>	<p>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02-3460-7334</p>
	<p>▶사업 : 코로나19 관련 의료/위생용품 긴급 수출 지원</p> <p>▶대상 : 한국산 의료용품, 위생용품의 해외 수출에 관심 기업 (HS code30(의료용품), 90(의료기기) 개별 항목 취합)</p> <p>▶내용 : 협회 글로벌 네트워크인 글로벌파트너스클럽(67개국, 235개 기관) 및 대사관을 통한 전세계 홍보 진행</p> <p>▶기한 : 2020. 4. 24(금)까지 신청 가능</p>	<p>한국무역협회 02-6000-5543 02-6000-5549 02-6000-5279</p>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수출지원	<p>▶사업 :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국제한 예로기업 접수</p> <p>▶대상 : 입국 제한 조치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p> <p>▶내용 : 해외기업의 사업 목적상 입국시 격리면제 등 시행 지원 (국내 중소기업 관련 사업 목적상 입국 시 임시 격리(1박 2일) 될 수 있도록 지원)</p>	<p>중소벤처기업부 042-481-6893 042-481-8903</p>
	<p>▶사업 : 2020년 1차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 <p>▶대상 : '19. 7월 이후 수출인력 활용 목적 청년을 채용했거나 공고일 이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청년글로벌마케터 채용 요건 : 19년 7월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채용된 만19~34세 및 토익 700점 이상 또는 新HSK 5등급 이상 등 어학실력 보유자</p> <p>▶내용 : 1) 인력알선 : 지원기업이 청년인력 알선 희망 시, 적합 인력 추천 및 채용 지원(기업당 최대2명) 2) 수출교육 : 실무 교육과정 온라인 제공 및 자문 3) 멘토링 : 기업 내 멘토 지정(활동비 월20만원 지원) 4) 해외마케팅 활동 : 마케팅 및 판매 촉진활동 소요 비용 한도 내 지원(1인당 430만원 한도 내 지원) **기한 : 2020. 5. 29(금)까지 신청 가능</p>	<p>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717</p> <p>한국중소벤처 무역협회 02-2138-7997</p>
	<p>▶사업 : 2020년 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p> <p>▶대상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p> <p>▶내용 : 1) 지원규모 : 380개사 내외 2)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3)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기한 : 2020. 5. 29(금)까지 신청 가능</p>	<p>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717</p> <p>(경기)지방중소벤처 기업청수출지원센터 031-201-6800</p>
	<p>▶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모집</p> <p>▶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아래 지원 제외)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2) 휴-폐업중인 기업 3)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4)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5)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 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p> <p>▶내용 : 1) 지원규모 : 총 2,000백만원, 1000개사 이내 2) 지원기간 : 2020. 4. 1(수)~6.30(화) 한시적 지원 3) 지원내용 : 국내에서 항공으로 배송이 가능한 모든 국가 (국가제한 없음) 대상으로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 지원 (해외배송비 : 국제항공운송비 + 현지내륙운송비)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p> <p>▶내용 : 2020. 5. 29(금)까지 신청 가능</p>	<p>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2-6678-4463</p>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수출지원	<p>▶사업 :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p> <p>▶대상 :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p> <p>▶내용 : 전문무역상사의 협조를 받아 해외로부터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조달 지원</p>	<p>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21</p>
	<p>▶사업 : 국제식품박람회 개최 취소에 따른 운송비 피해 지원</p> <p>▶대상 : 20. 3월말 기준 취소 박람회 참가 수출업체 (도쿄,애너하임,싱가포르 박람회 참가업체(αT 선정))</p> <p>▶내용 : 각 박람회 사전설명회 개최일 이후 발송한 전시상품 운송비 관련 비용 지원</p> <p>1) 운송-통관비(해상,항공 운송비, 창고보관료, 통관비)</p> <p>2) 보관-폐기비</p> <p>3) 냉장-냉동 비품 임차비</p>	<p>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061-931-0987</p>
	<p>▶사업 : 우리 기업인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지원</p> <p>▶대상 : 중국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 또는 중국 기업</p> <p>▶내용 : '신속통로' 신설로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 적용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p> <p>-출국 전</p> <p>1)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p> <p>2)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p> <p>-중국 입국 후</p> <p>1)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p> <p>2)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p> <p>**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하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인후이성</p>	<p>외교부 02-2100-2114</p>
	<p>▶사업 :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산물 수출 지원</p> <p>▶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산물 수출업체</p> <p>▶내용 : 온라인 몰(마켓) 입점, SNS 홍보, 배달앱 연계 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상담회 지원</p>	<p>해양수산부 044-200-5480</p>
기타	<p>▶사업 : 화상회의 서비스-제품 보안 강화 지원</p> <p>▶내용 : 1) 화상회의 서비스, 제품의 보안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p> <p>2) 보안 검증된 화상회의 서비스, 제품 보급 확대</p> <p>1. 국산 영상회의 서비스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p> <p>2. 중소, 영세 서비스 개발기업 대상 보안컨설팅 지원 및 필요한 보안제품, 서비스 비용 지원(~1천만 원)</p> <p>3. 신속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획득 지원</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441 044-202-6453 044-202-6461</p>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기타	<p>▶사업 : 코로나19 극복 스토어 36.5 제품 할인 공급 프로모션</p> <p>▶대상 : e-store 36.5+ 입점 기업(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p> <p>▶내용 : 지원규모-100개 제품 이내(기업당 제품 7~10개 제한) 진흥원에서 입점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을 e-store 36.5+에서 오프라인 판매장 회원이 구매한 내용의 15% 할인 프로모션 비용 지원 예정</p>	<p>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031-697-7835</p>
	<p>▶사업 :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p> <p>▶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 골목상권으로 점포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해당 골목상권의 대표조직, 중간조직 참여 및 1/2 이상이 사업 동의)</p> <p>▶내용 : 1) 임대료 인하협약 체결 및 유관 사업 연계 2) 안심방문 환경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3)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적합 상권 운영방안 마련 등</p>	<p>행정안전부 044-205-3921</p>
	<p>▶사업 : 기업인 등에 대한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지원</p> <p>▶대상 : 해외 출국시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국가만 해당 (모든 해외 지원 사항은 아님)</p> <p>▶내용 : 건강상태 확인서 지급기관 연결 및 확인서 발급 등 지원</p>	<p>산업통상자원부 044-203-5626</p>
	<p>▶사업 :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p> <p>▶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p> <p>▶내용 : 1)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2) 본인 및 부모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2 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3)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 대상 저금리 전환 대출</p>	<p>교육부 044-208-6271</p>
	<p>▶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 완화</p> <p>▶대상 :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p> <p>▶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 지원 (이용자부담 평균 37.6% 완화)</p>	<p>여성가족부 02-2100-6365</p>
	<p>▶사업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12개 외국어 통-번역 지원</p> <p>▶대상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p> <p>▶내용 : 중대본 등 부처 카드뉴스 발췌, 부처별 요청 자료 등 번역지원(웹포스터,카드뉴스 또는 번역본 파일 제공)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필리핀),몽골어,러시아어,태국어,우즈베크어,라오스어,크메르어(캄보디아),네팔어</p>	<p>여성가족부 02-2100-6372</p>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기타	<p>▶사업 : 아동돌봄쿠폰 지급</p> <p>▶대상 :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p> <p>▶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원</p>	보건복지부 129
	<p>▶사업 : 소비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p> <p>▶대상 : 지류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 (월별 할인 구매 한도 100만원 예산 소진시 까지)</p> <p>▶구매 : 시중은행 15곳(신분증 지참, 현금 구매시 할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 유지</p>	중소벤처기업부 042-481-8930

3 정부 지원정책 확인 가능 경로 및 지원안내 기관

구분	지원내용	문의처
지원정책확인 및 지원안내 기관	<p>▶사업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서비스 제공</p> <p>▶내용 : 여러 행정기관,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p>	정부24 (http://www.gov.kr)
	<p>▶사업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 근로자 보호 가이드</p> <p>▶내용 : 코로나19 관련한 사업장 조치사항과 정부의 지원 제도를 종합 정리한 가이드 배포</p>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p>▶사업 :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종합 안내</p> <p>▶내용 : 코로나19 관련한 정부 지원사업 종합 안내</p>	기업마당 (www.bizinfo.go.kr)
	<p>▶사업 :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종합안내</p> <p>▶내용 : 코로나 19 관련 은행별 금융지원방안 종합 안내</p>	은행연합회 (www.kfb.or.kr)
	<p>▶사업 :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정보 제공</p> <p>▶내용 : 각 정부 부처 지자체별 지원 정책 종합 안내, 실시간 상담 가능</p>	온라인청년센터 (youthecenter.go.kr)
	<p>▶사업 :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p> <p>▶내용 : 코로나 19관련 다수 소비자가 겪을수 있는 불편사항 정보 게시</p>	금융감독원 1332
	<p>▶사업 : 코로나19 피해 애로 상담센터 운영</p> <p>▶내용 : 중소벤처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부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애로 상담</p>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안)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핵심 수칙 메시지(안) >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핵심 수칙(안)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WHY?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쉽니다.
02. 증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03.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04.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씩습니다.
05. 기업, 사업주 등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게끔,
또는 집으로 돌아가 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WHY?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02.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03.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합니다.
04.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05.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제3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WHY?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01.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02.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03.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0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립니다.
05.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합니다

WHY?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02.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 합니다.
03.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은 손이 자주 닿는 곳(승강기 버튼, 출입문,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과 공용 물건(카드 등)을 매일 소독 합니다.
04.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에 따라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WHY?



코로나 19는 나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01.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02.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반대합니다.
03.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04.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

① 마스크 사용 일반 원칙

- 마스크 착용보다 손씻기, 사람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 배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사람들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야외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돌보는 가족, 코로나19 감염 시 치사율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과 돌봄 인력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②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합니다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되도록 착용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나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세탁방법으로 자주 세탁해 주세요.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다음의 경우는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KF 80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권고)
 - 의료기관, 약국, 요양원,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 ※ 그 외 마스크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사용지침을 참조하세요.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환경 소독 >**①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 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 (5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 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5ml 를 붓고 (예, 생수통 1/2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 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 를 붓고 (예, 생수통 1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②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체로 입과 손에 닿아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③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2020.4.2기준 [제3-1판]) 을 참조하세요.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①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 18.58%, 2020.4.1. 0시 기준)입니다.
-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② 집에 머무르세요

-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③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④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과 식기를 공유하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⑤ 스트레스로 힘들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수면을 하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임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건강한 생활 습관 >

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 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동영상과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 어르신 또는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이전에 습관이 되지 않았던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 받으세요.
-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드세요.

④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 (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2)을 받을 수 있습니다.